



「민법(제 1 편제 5 장)」

- 국 가 · 지 역: 대만
- 제 정 일: 1929년 4월 20일
- 개 정 일: 2019년 5월 24일
- 공 포 일: 2019년 6월 19일

원문	번역문
第一篇 總則	제 1 편 총칙
第五章 期日及期間	제 5 장 기일 및 기간
第一百十九條 (本章規定之適用範圍) 法令、審判或法律行為所定之期日及期間，除有特別訂定外，其計算依本章之規定。	제 119 조 (이 장의 적용 범위) 특별히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재판·법률행위에서 정하는 기일 및 기간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第一百二十條 (期間之起算) 以時定期間者，即時起算。 以日、星期、月或年定期間者，其始日不算入。	제 120 조 (기간의 기산) 기간의 단위를 시로 정한 경우 즉시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단위를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第一百二十一條 (期間之終止)

以日、星期、月或年定期間者，
以期間末日之終止，為期間之終
止。

期間不以星期、月或年之始日起
算者，以最後之星期、月或年與
起算日相當日之前一日，為期間
之末日。但以月或年定期間，於
最後之月，無相當日者，以其月
之末日，為期間之末日。

第一百二十二條 (期間終止之延 長)

於一定期日或期間內，應為意思
表示或給付者，其期日或其期間
之末日，為星期日、紀念日或其
他休息日時，以其休息日之次日
代之。

第一百二十三條 (連續或非連續期 間之計算法)

稱月或年者，依曆計算。

제 121 조 (기간의 종료)

기간의 단위를 일·주·월·연으
로 정한 경우 기간 마지막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기간을 주·월·연의 첫날부터 기
산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마지막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
는 날의 전날을 그 기간의 마지
막 날로 한다. 다만, 기간의 단위
를 월·연으로 정하였으나 마지
막 달에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을 그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
다.

제 122 조 (기간 종료의 연장)

일정한 기일 및 기간 안에 의사
표시 또는 지급을 하여야 하는
때에 기일 및 기간의 마지막 날
이 일요일·기념일·그 밖의 공휴
일인 경우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그 기간의 마지막 날로 대체한
다.

제 123 조 (연속 또는 비연속 기간 의 계산방법)

월·연이 연속되는 경우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p>月或年非連續計算者，每月為三十日，每年為三百六十五日。</p>	<p>월·연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30 일, 1년을 365 일로 한다.</p>
<p>第一百二十四條 (年齡之計算) 年齡自出生之日起算。</p>	<p>제 124 조 (나이의 계산)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 출생일부터 기산한다.</p>
<p>出生之月、日無從確定時，推定其為七月一日出生。知其出生之月，而不知出生之日者，推定其為該月十五日出生。</p>	<p>출생한 월과 일이 모두 명확하지 않은 경우 7 월 1 일에 출생하였다고 추정한다. 출생한 월은 알지만 출생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달의 15 일에 출생하였다고 추정한다.</p>